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6. . . .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담당업무의 증가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청소년업무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로 조정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소년선도 및 보호

제7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 신 설 > 14.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15.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u>청소년선도 및 보호</u> 10. ~12. (생략)	제6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청소년선도 및 보호</u>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 삭 제 > 10. ~ 12. (현행과 같음)	청소년담당 소속과 변경으로 국소관 업무 조정